

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상, 장소 및 기준을 확인하세요.

동물보호법 제87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),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6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)



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장

- 1) 동물판매업(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·중개하는 동물판매업으로 한정): 경매실, 준비실
- 2) 동물장묘업: 화장(火葬)시설 등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의 처리시설

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영업장

- 1) 동물위탁관리업: 위탁관리실
- 2) 동물미용업: 미용작업실
- 3) 동물운송업: 차량 내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



영업장 출입·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확인하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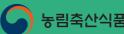
동물보호법 제86조(출입·검사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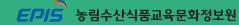
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은 영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

* 시정조치 미이행 시, 과태료 100만원 이하(제101조제3항제25호)









무허가 또는 무등록 업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

동물보호법 제69조(영업의 허가), 제85조(영업장의 폐쇄)



반려동물 수입, 판매, 장묘업이 등록제 **⇒ 허가제로 전환***

* **반려동물 영업 8종** : (허가) 생산, **수입, 판매, 장묘**, (등록) 전시, 위탁관리, 미용, 운송

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** 강화

- * 처벌 강화: (무허가)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, (무등록)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** 무허가·무등록 영업장,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 지속 시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 등 조치 가능

영업자와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



동물보호법 제78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, 제101조(과태료)

'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 금지' 등 영업자의 주요 준수사항* 위반 시 **영업정지**와 더불어 **벌금 또는 과태료가 병과 될 수 있음**

- * 12개월령 미만 개·고양이 교배·출산 금지: 5백만원 이하의 벌금
- * 2개월령 미만 개·고양이 판매 금지: 3백만원 이하의 벌금
- *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유기 ·폐기 목적 거래 금지: 3백만원 이하 과태료







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신청 잊지마세요.

동물보호법 제79조(등록대상동물의 판매에 따른 등록신청)



반려동물을 생산·수입·판매하는 영업자는 등록대상동물(반려견)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에게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해당 구매자 명의로 **동물등록*을 신청한 후 판매**

* 동물판매업 의무 → 동물판매업 + 동물생산·수입업(동물 직접 판매 시) 의무



등록대상동물의 거래내역을 매월 지자체에 신고하세요.

동물보호법 제80조(거래내역의 신고)



동물생산·수입·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취급한 등록대상동물 (반려견)의 **거래내역*을 다음달 10일까지 지자체에 신고**

* 거래일자, 동물의 종류 및 마릿수, 구입처 및 판매처(영업 허가번호, 동물등록번호 등) 등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신고



